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43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와 보호자(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 1명을 말한다)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따른 장기등기증자

7.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